#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가</u> <u>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u>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 울 특 별 시 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20080100700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20081125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20230426

[www.modenoffice.com]

[]

# moden office PESMY

### 정보공개서

[(주)모든오피스]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4 . 04 . 16 .

[(주)모든오피스]

####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 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 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 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서울시 강남구 도곡로37길 51

#### 1층(파인캐슬)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02-517-3000/ 02-538-6075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02-538-6743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체인관리팀/ 02-538-6075

#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5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9
Ш.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1	3
IV.	가맹점사업	자의 부담1	3
٧.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2	<u>'</u> 1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3	5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3	5
VIII.	교육・훈련(	에 대한 설명4	10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4	2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 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 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 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 청하시기 바랍니다.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	.지	주 소					
	모든오피스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37길 51 1층(파인캐슬)					
(주)모든오피	법인 설립등기일 <sup>①</sup>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스	2003.7.09.		2003.7.30.	정의진	02-517-3000		02-538-6743	
	법인등록번호 110111		1-2818742 사업자등록		루번호 214-		-87-38348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sup>①</sup>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정의진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37길 51					
(임원)	경취선	모든오피스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급전/			정의진	02-517-3000	02-538-6743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서울	-시 강남구 도곡로3'	7길 51			
(임원)	이명례	모든오피스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급전/			정의진	02-517-3000	02-538-6743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યો છે હો		모든오피스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37길 51					
사용인 (임원)	강용철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급전)			정의진	02-538-6075	02-538-6743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sup>④</sup>		주 소				
			서울	시 강남구 도곡로3'	7길 51			
사용인	정수진	모든오피스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임원)			정의진	02-517-3000	02-538-6743			
	법인등록번	ই	入	·업자등록번호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모든오피스]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sup>①</sup>	모든오피스	오피스에 필요한 모든상품을 판매
상 호 <sup>②</sup>	모든오피스 00점	
상표(서비스표) <sup>3</sup>	Moden office   ₽€₽₽△	서비스표 등록번호: 4007211470000
광 고 <sup>④</sup>		
그 밖의 영업표지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mathbb{Q}}$ 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sup>②</sup>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1년	12,314,881	8,942,671	3,372,210	22,266,042	234,160	141,387
2022년	14,772,228	11,280,347	3,491,881	24,577,428	309,054	119,671
<mark>2023년</mark>	13,808,024	10,275,529	3,532,495	24,815,048	306,966	40,613

그 근거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사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반드시 삽입**하셔야 합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sup>®</sup>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6. 가맹본부의 임원<sup>①</sup> 명단 및 사업경력<sup>②</sup>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717141H3	J.=	) 기이		사업경력	
관련여부 <sup>3</sup>	이름	현 직위	기간 <sup>④</sup>	직위	담당 업무
			2006.07.~ 현재	대표이사	가맹점 총괄관리
	정의진	대표이사			
가맹사업	이명례	이사	2015.01.~ 현재	관리이사	자금관리
관련 임원	정수진	이사	2022.11. ~ 현재	이사	비상근
	0 1 4	11			
가맹사업	정태진	감사	2021.01.~ 현재	관리이사	관리이사
비관련	0 11.17	JE (I)			
임원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sup>-</sup> 상근	수(명) 비상근	직원수(명) <sup>①</sup>	
2023년 12월 31일	3		65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

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sup>①</sup>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등록만료일
모든오피스 (상표권)	제품 사용 및 대가 수수	2006.10.02출원 2007.08.17등록 2006.10.02출원 2007.09.17등록 2006.10.02출원 2007.09.17등록 2006.10.02출원 2007.09.17등록 2006.10.02출원 2007.10.09등록 2006.10.02출원 2007.09.17등록 2006.10.02출원 2007.09.17등록 2006.10.02출원	출원제402006005030 6 등록제400721147000 0 출원제412006002477 1 등록제410154440000 0 출원제412006002476 9 등록제410154438000 0 출원제412006002476 6 등록제410154436000 0 출원제412006002477 3 등록제410155228000 0 출원제412006002477 0 등록제410154439000 0 출원제412006002477	(주)모든 오피스	2027.08.17 2027.09.17 2027.09.17 2027.10.09 2027.09.17 2027.09.17
모든오피스 (서비스표권)	제품 사용 및 대가 수수	2006.10.02출원 2007.08.17등록	출원제402006005030 6 등록제400721147000 0	(주)모든 오피스	2027.08.17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Ⅱ. 가맹본부의 [모든오피스] 가맹사업 현황

1. [모든오피스] 을 시작한 날: 2006년 12월 07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03년 7월 30일)

### 2. [모든오피스] 연혁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모든오피 스	모든오피스	정의진	2006.12.07. ~ 2024.4 .16 현재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37길 51

### 3. [모든오피스] 업종

영업표지	업종					
ㅁㄷ싀᠈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모든오피스	기타 도소매	문구.사무용품외				

###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모든오피스]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	2022.12.3	1.	2023.12.31.			
시역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41	38	3	41	38	3	40	37	3
서울	9	7	2	9	7	2	8	6	2
부산	2	2	_	2	2	_	2	2	_
대구	1	1	_	1	1	_	1	1	_
인천	3	3	_	3	3	_	4	4	_
광주	1	1	_	1	1	_	1	1	_
대전	_	_	_	_	_	_	_	_	
울산	1	1	_	1	1	_	1	1	_
세종	1	1	_	1	1	_	1	1	_
경기	8	7	1	8	7	1	8	7	1
강원	1	1	_	1	1	_	1	1	_
충북	3	3	_	3	3	_	3	3	_
충남	1	1	_	1	1	_	1	1	_
전북	2	2	_	1	1	_	1	1	_
전남	1	1	_	1	1	_	1	1	_
경북	4	4	_	4	4	_	4	4	_
경남	3	3	_	4	4	_	3	3	_
제주	-	_	_	_	_	_	_	_	_

#### 5. 바로 전 3년간 [모든오피스]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sup>①</sup>	계약 해지 <sup>②</sup>	명의 변경 <sup>③</sup>	연말
2021	38	1		1		38
2022	38	2		2		38
2023	38	1		2		37

[모든오피스] 가맹점의 자세한 내역은 별지를 확인하십시오.

- 6. [모든오피스]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해당사항 없음.
-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 $^{\mathbb{Q}}$ 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mathbb{Q}}$

[모든오피스]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sup>®</sup>.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	)23년 가맹	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 구 매출액		
지역 <sup>④</sup>	2023년 말	연간 평균		연간 <sup>3</sup> 매출액(	평균	연간 <sup>3</sup> 매출액(		비고 <sup>⑤</sup>
\\\\\\\\\\\\\\\\\\\\\\\\\\\\\\\\\\\\\\	가맹점수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sup>2</sup> 당	상한	면적 3.3m <sup>2</sup> 당	하한	면적 3.3m <sup>2</sup> 당	
전체 <sup>6</sup>	37	239,388	5,227	929,342	28,241	53,108	1,524	
서울	6	265,946	5,823	929,342	11,617	107,217	2,144	
부산	2	해당없음						5곳 미만
대구	1	해당없음						5곳 미만
인천	4	해당없음						5곳 미만
광주	1	해당없음						5곳 미만
대전	_	해당없음						5곳 미만
울산	1	해당없음						5곳 미만
세종	1	해당없음						5곳 미만
경기	7	238,885	5,124	898,591	28,241	68,679	1,717	
강원	1	해당없음						5곳 미만
충북	3	해당없음						5곳 미만
충남	1	해당없음						5곳 미만
전북	1	해당없음						5곳 미만
전남	1	해당없음						5곳 미만
경북	4	해당없음						5곳 미만
경남	3	해당없음						5곳 미만
제주	_	해당없음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다음의 산식을 따른 것입니다.]

[매출액 = 당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 공급액  $\times$  추정비율 $^{\otimes}$ (마진25% )]

[당사가 보유한 가맹점사업자 원가 분석 자료에 따르면 물품 공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72%~75%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역산하여 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주)모든오피스 본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 8. [모든오피스]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모든오피스]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 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sup>①</sup>	평균 영업기간 <sup>②</sup>
2023	37	11년 7개월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sup>①</sup>의 일반 정보

해당사항 없음.

####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모든오피스]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 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32]쪽을 참고하십시오.

구분 <sup>①</sup>	수단 <sup>②</sup>	기간 <sup>③</sup>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비고 <sup>④</sup>
· –		' -	1 , - , - , , , , , ,	'

		미포함)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270,815	270,815		
	소계		270,815	270,815	-	
⊐l →	비공개				_	
광고	비공개	비공개	12,000	12,000	-	
	비공개	비공개	258,815	258,815	-	비공개
	소계		0	0		
판촉	비공개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우리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우리은행	프랜차이즈 가맹예치담당팀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4길 4(메디앙스401빌딩)	02-567-7090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우리은행] 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우리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모든오피스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우리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 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사항 없음.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sup>①</sup>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사실이 없습니다.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해당사항 없음.

####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모든오피스]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보증보험증권,부동산담 보물로 대체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sup>①</sup>	금액 <sup>②</sup>	지급 기한	반환조건 <sup>③</sup>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 5,500 ]				
가입비	5,500	계약 체결 동시 에 지급	영엽 개시 이선	위해 소요된 실제	반환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 약금을 공제 (계약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사후 가입비로 전환)
••••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sup>①</sup>	금액 <sup>②</sup>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sup>③</sup>	비고
총계	[ 30,000 ]			
담보목적물	30,000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직전년도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1회 평균 상품 등 의 대금(원부재료 대금 포함)의 2배 이내 <sup>④</sup>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5,500
가입비	5,5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6]쪽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sup>①</sup>	지급대상 <sup>②</sup>	금액 <sup>®</sup>	면적 3.3㎡당 금액 <sup>®</sup>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교 <sup>⑤</sup>
총계		[171,100]				
필수설비(정착 물)	협력업체	2,800	56	설치후 3일 이내	설치 전 계약취소	컴퓨터2대,핸드 스캐너1,프린터 1,돈통1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협력업체	50,000	1,000	내부 인테리어 공사완료 3일 이내	공사 전 계약취소	50평 기준 평당 1백만원 기준
최초 공급 상품 비용	모든오피스	80,000		물품 공급후 3일 이내	상품 미공급시	최종검수후 3일이내 현금
포스 프로그램비	모든오피스	1,000		최초 체인가맹시	개점전 계약취소 (그간 소요 비용 제외)	2대 기본설치
체인운영비	모든오피스	200		최초 체인가맹시	개점전 계약취소	매월20만원씩 6개월 선납
포스사용비	모든오피스	100		최초 체인가맹시	개점전 계약취소	2대기본 1대당 매월5만원씩 6개월 선납
카다로그 대금	모든오피스	12,000		입고후 3일이내	상품미공급 시	2천부기준 1부당 6천원
차량구입비	해당업체	15,000		자체구입	미구입시	다마스,라보탑 차
개업 마케팅비용	해당업체	10,000		자체진행	미진행시	판촉물, 전단지외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인테리어 업체를 지정하거나 인테리어에 관련 일체의 비용을 받지않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sup>①</sup>	선정 기준 <sup>©</sup>
당사 점포개발팀 (전화:02-517-3000)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sup>©</sup>	계약·채용 기준 <sup>②</sup>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금치산자·한정치산자가 아닐 것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모든오피스]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물품의 상세 내역은 첨부한 카탈로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은 한 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

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32]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sup>①</sup>	지급대상 <sup>②</sup>	금액 <sup>3</sup>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 <u>고</u> ④
정기납입경비 (가맹운영비)	모든오피스	월 220	당월 10일			6개월분 선납
리스료		해당없음				
광고 분담금	모든오피스	발생시	발생시			
판촉분담금	모든오피스	행사별로 분담 등				
교육훈련비	모든오피스	발생시	교육 실시 10일 이전			교육 필요시 지급
간판류 임차료		해당없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sup>⑤</sup>	해당업체	해당없음	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영업지역 보장금		해당없음				
시설, 각종 기기의 교채보수비용	해당업체	해당없음	교체·보수 후 5일 이내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점포환경개선 비용	해당업체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38페이지 참조
회계처리 비용		해당없음				
POS 사용료	모든오피스	월 110	당월 10일			6개월 선납
지연이자 <sup>®</sup>	모든오피스	연10~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월 계속가맹금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그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총계	모든오피스	발생시	발생시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모든오피스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분류상 소매업 자동차 제외에 해당되어, 해당사항 없음.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sup>①</sup>	금액 <sup>②</sup>	지급 기한	반환조건 <sup>③</sup>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 ]				
추가 교육비④	협의하여 결정	교육 시작 7일 이전	교육 시작 1일 이 전에 계약 해지		추가교육 필요시
점포 이전비 <sup>⑤</sup>	협의하여 분담	점포 이전 후 10일 이내	점포 이전에 합의 하지 않을 경우		점포이전 합의시
••••					

[당사는 계약종료 시점에 점포 위치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가맹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사가 판단하여 협의한 결과 가맹점도 이에 동의하면 점포 이전비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 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 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모든오피스]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모든오피스]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포함하여 가맹금 [금 550]만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29]쪽에 나와 있습니다.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10%~9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모든오피스]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sup>①</sup>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모든오피스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분류상 소매업 자동차 제외에 해당되어, 해당사항 없음. 품목별 세부적인 공급가격은 별도로 제공합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당사는 물품구입 및 임차현황에 특수관계인이 없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해당사항 없음.

####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 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sup>①</sup>	제한내용 및 조건 <sup>②</sup>	위반시 책임 <sup>③</sup>	비고 <sup>④</sup>
문구사무용품	당사가 판매하는	1회 위반: 구두 경고	
식음료, 생활용품	동일한 상품을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잡화	타사로부터 매입하여	시정요구	
전산용품,잉크토너	판매할 수 없음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sup>①</sup>	상품 · 용역명 <sup>②</sup>	제한내용 및 조건 <sup>3</sup>	위반시 책임 <sup>④</sup>	비고 <sup>⑤</sup>
모든오피스 본사 문구.사 <sup>.</sup>		본사 및 본사와 가맹거래중인 다른 가가맹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동일한 문구.사무용품은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 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잉크.토너, 복사지,		서면통보(판매프로그	00001년10이마 키즈
문서화일, 필기류 외		램에 공지)	2023년12월말 기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 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sup>①</sup>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2}$		
등 등 일반 입중 범위 ·	가맹본부	계열회사	
문구사무용품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모든오피스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변경 가능 여부	변경 사유
영업지역 설정기준 은가 맹점소 재 지의 행정구역 상 區 단위(서 울, 경기, 광역 시의 경우 제 단위)를 기준으로 정한다. 단, 특별한사 정이 있는 경우 "갑" 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가맹점 사업자의 동의시 가능	신도시 지정 등 영업지역의 개발 내지 주거환경 변화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영업지역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 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정 기준 <sup>①</sup>	설정방법 <sup>②</sup>	변경 가능 여부 <sup>3</sup>	변경 사유®
행정구역당 1점포단, 특수상권(백화 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가맹점사업자 동의시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 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 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			

[당사는 영업지역을 변경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60일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가맹사업자에게 사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가맹사업자는 변경 요청을 받은 날 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사에게 승인 또는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때, 가맹사업자가 당사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가맹사업자가 합당한 사유없이 동의를 하지않을 경우에는 당사는 임의로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사업자가 도로사정의 변경이나 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영업지역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 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모든오피스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 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모든오피스]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자와 협의하여 공급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sup>①</sup>	유통업체명 <sup>②</sup>	주소	취급품목 <sup>3</sup>	가맹점과의 구분 <sup>④</sup>
	11번가	www.11st.co.kr	문구사무용품 외	모든 가맹점에 독립 쇼핑몰 제공
	G마켓	www.gmarket.co.kr	문구사무용품 외	모든 가맹점에 독립 쇼핑몰 제공
온라인	옥션	www.auction.co.kr	문구사무용품 외	모든 가맹점에 독립 쇼핑몰 제공
	위메프	www.wemakeprice.c	문구사무용품 외	모든 가맹점에 독립 쇼핑몰 제공
	모든오피스	www.modenoffice.c	문구사무용품	가맹본부
	모든오피스	om	외	운영쇼핑몰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5. 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신설)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	·내 온라인·오프라인	] 판매 매출액 비중	<u>-</u> ①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sup>②</sup>		
2023	<mark>26%</mark>	<mark>68%</mark>	3%	3%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sup>①</sup>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sup>②</sup>
2023	0%	0%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모든오피스]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 1 ]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 1 ]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 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 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_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_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9조 제1항
○ 가정계구장의 가장ㅁ 등의 시합의구를 시기시 악덕한 경구 ■ ■ ■ ■ ■ ■ ■ ■ ■ ■ ■ ■ ■ ■ ■ ■ ■ ■ ■	제1호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제9조 제1항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2호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제9조 제1항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제3호 제가목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제9조 제1항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3호 제나목
○ [모든오피스]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제9조 제1항
않은 경우	제3호 제다목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제9조 제1항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제3호 제라목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1 10 000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가맹점사업자가 규정된 영업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맹계약서
1. /F병점사업사가 표정된 형업계시 의구를 위한만 경구 	제17조
2. 가맹점사업자가 상품대금 결제 및 로열티를 2회이상 연체 및 채무불이행	가맹계약서
의 경우	제45조
3. 가맹사업자가 지정된 영업지역 이외에서 영업활동을 하거나 상품을 판매	가맹계약서
하였을 경우	제7조
4. 가맹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영업지역을 변경하거나, 가맹본부의 사전승인	가맹계약서
없이 가맹점을 이전한 경우	제7조
5.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규제 및 지도를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이	가맹계약서
행하지 아니하거나 해태한 경우	제26조
6. 가맹사업자가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여,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상품 이외의	가맹계약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30조
7.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등 일체의 영업표지를 임	가맹계약서
의로 변경사용하여 가맹본부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제4조
8.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의 양도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맹계약서
8. / 명심사업사가 영합의 상도표정을 취반한 경구	제51조
9. 가맹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On-Line 및 Off-Line 상에서, 가맹본부	가맹계약서
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키거나 훼손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제45조
10. 가맹점사업자가 동종 가맹점을 영위하거나, 그러한 가맹점의 영업에 참여	가맹계약서
하고 그와 업무를 제휴하는 경우	제25조
11. 가맹점사업자가 가압류, 가처분(단순 채권보존인 경우는 제외), 조세체납	가맹계약서
처분 등을 받는 경우	제45조
1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가맹계약서
있는 경우	제45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ul><li>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li></ul>	15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15조
<ul><li>전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li></ul>	15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해를 초래한 경우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15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 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5조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 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 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 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15조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15조
o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 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15조
ㅇ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15조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사업법의 개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	제55조 제1호
○ 가맹사업의 통일화를 위한 영업방침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제55조 제2호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동의를 얻지 못 할 경우에는 수정사유를 2회에 걸쳐 서면으로 통지하고, 동의를 구합 니다. 이에도 동의를 구하지 못 할 경우에는 수정전 계약내용으로 운영합니다.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을 환매하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sup>①</sup>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수인이 당사에게 양수 금 (5,500)천원을 지급 하고, 신규 가맹점사업 자와 동일하게 소정의 교육, 훈련을 이수하고, 그 비용을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 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이 가매보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문의: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 [금 550]만원을 당사에 지급하셔야 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sup>①</sup>	가능 여부(조건) <sup>2</sup>	이전 범위 <sup>③</sup>	절차 <sup>④</sup>	기타 의무사항 <sup>⑤</sup>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 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팀 검 토(상속인 면담 포 함, 30일 가량 소 요) → 승인 여부 통지 → 상속인, 가 맹본부의 상속 승 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 영권 이전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불가능			
업무위탁	불가능	_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 해당 영업지역 내에서] 귀하가 [모든오피스]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sup>①</sup>	경업허가 절차 <sup>②</sup>	비고 <sup>③</sup>
(주)모든오피스가 판매취급하고 있 는 모든 상품 및 관련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 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체인개설팀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모든오피스]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09:30 ~ 19:00(10시간)	1주 5일이상 개점	문의: 체인개설팀 (02-538-607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sup>①</sup>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sup>2</sup>	대체 가능 인력 <sup>3</sup>	비 <u>고</u> ④
3명 이상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모든오피스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sup>①</sup>	광고		부담비율 분담 절차 <sup>④</sup> 비		비고 <sup>⑤</sup>
1 4	성격 <sup>2</sup>	본사부담 <sup>③</sup>	가맹점부담	한 다 본기	714
광고 상문 전체 행사 +기	상품광고	광고비의 100%	내용에 따라 일부부담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대중매체 광고
	상품광고 +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100%	내용에 따라 일부부담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할인행사	할인금액	내용에 따라 일부부담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판촉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시 전체 적용
판촉행사	증정행사	증정상품 출하가	내용에 따라 일부부담	"	"
	팜플렛 등 제작	판촉물 제작비용	내용에 따라 일부부담	"	,
	기타 개별행사	행사에 따	라 유동적	"	"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하게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 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 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

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 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맹사업자는 계약기간 내 또는 게약 종료 후 1년내 가맹계약서상 제24조 [비밀유지의무], 제25조 [경업금지의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조로 각 금3,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맹사업자가 가맹계약서상 계약의 종료일로부터 제48조 [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사항] 제1항, 제2항에 규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제1항의 손해배상 외에 1일당 금30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ㆍ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sup>①</sup>	소요비용 <sup>②</sup>
합계		47일 내외	[13p~17p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OO기관에 가맹금 예치	D-29(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4(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sup>③</sup>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sup>①</sup>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sup>2</sup>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sup>3</sup>	지급절차 <sup>④</sup>	비용부담 제외사유 <sup>⑤</sup>	비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 어 등의 각관적 이 등의 객관적 이 등의 객관적 이 연정되 는 경우 이위생이 의 결함 이 급 이 어렵이 어렵어 이 어렵어 이 어렵어 이 어렵어 이 어렵어 이 어렵어 이 어렵어 이 어렵어 이 이 어렵어 이 이 이 이	비용을 제외	는 점포환경 개선: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	등 공사비용 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 부) → 90일 이내에 가맹 본부 부담액	이내에 가맹 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 (계약의 해지· 영업양도 포 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 담액 중 잔여 기간에 비례	
	용은 제외)		범위내에서	수 가능	

	분할지급 가	
	늘)	
	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	
	는 가맹본부	
	가 지정한 자	
	를 통하여 점	
	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	
	이 끝난 날부	
	터 90일 이내	
	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	
	급	
	<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	
	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	
	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	
	부) → 3차에	
	걸쳐 가맹본	
	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	
	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	
	액의 30%, 2	
	차 : 1차 지	
	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	
	부터 60일 이	
	내, 총 부담액	
	의 40%)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지원정책 <sup>①</sup>	주요 내용 <sup>②</sup>	지원조건 <sup>③</sup>	지원기간	지원금액 <sup>④</sup>	비고 <sup>⑤</sup>
개점행사비	가맹점 오픈시 판촉인원 파견 및 전단지, 기념품 등의 판촉비용 지원	가맹점의 매장면적, 예상매출액에 따라 판촉인원 수 및 판촉비용 차등 지원	오픈일로부터 3일간	행사내용에 따라 차등지급	
판촉장려금	해당없음				
판촉지원	매월 주요상품별로 특판실시	판매가에 5~10% 할인 (전 가맹점 해당)	가맹계약기간	소요되는 비용 전액 당사 부담	
반품지원	신년 캬다고 출시에 따라 삭제, 단종 제품류 중 일정한 품목에 대하여 반품지원	삭제, 단종 제품류 중 반품지원 품목 지정상품에 한함	카다로그 출시 후 60일 이내	반품후 상품다에서 상계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sup>①</sup>	절 차 <sup>2</sup>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5]일 이내에 가맹본 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 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 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 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 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체인관리팀 (02 <del>-</del> 538 <del>-6</del> 075)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5]일 이내에 가맹본 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 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 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 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 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체인관리팀 (02-538-6075)

###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사항 없음.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사항 없음.

### W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모든오피스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모든오피스]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3일	없음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	최소 8시간	교육시 통지	필요시 이수

####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16조에 따라 10일 내로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기한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16조에 따라 10일 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여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sup>①</sup>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17년 6개월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sup>③</sup>
7,699,940	[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별 부 가가치세 신고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 니다.]

## 재무상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